

행정자치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공사의 하자담보 존속기간 설정 등 하자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경기도

관 계 기 관 경기도 본청

내 용

1. 하자담보의 존속기간 설정 부적정
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함)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,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담보책임의 존속기한을 공종 구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, 다만,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.

또한,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위의 기준과 다르게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자치부 예규)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, 제10장 공사목적물의 하자, 3. 하자검사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.

그러나, 경기도에서는 ‘○○○ ○○○ ○○ ○○공사’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다르게 설정하였고 계약이행 중에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2. 최종 하자검사 미 실시 등 하자관리 부적정
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함)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,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담보 책임의 존속기한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,

위 법령에 따라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하자검사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자치부 예규)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, 제10장 공사목적물의 하자, 3. 하자검사의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고,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.

그러나, 경기도(○○○○, ○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○○○)에서는 ‘○○~○○○ ○○ ○○○○ ○○○ ○○공사’ 등 6건의 공사에 대해 정기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를 미 실시 또는 지연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는

하자담보 존속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관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